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민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29

발의연월일: 2025. 4. 1.

발 의 자: 강민국·김상훈·이헌승

김재섭 · 정동만 · 윤한홍

강명구 · 김도읍 · 이상휘

김태호 · 김미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,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은행 등 평가 의뢰자에게 예상되는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함. 이는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필요하나, 현재 과태료 부과 외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. 이에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신용조회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자도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기업신용조회회사 영업정지 근거 마련(안 제14조제2항제5호의2)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업정 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- 나. 평가 의뢰자의 행위규칙 마련(안 제22조의6제5항) 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등급을 요구하거

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등급을 요구하거 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행위규칙 마련

다. 평가 의뢰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(안제52조제3항제4호의9) 평가 의뢰자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법률 제 호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경우

제22조의6의 제목 "(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)"을 "(기업신용조회회사 등의 행위규칙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의 뢰자"라 한다) 또는 그의 이해관계인에게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 는 특정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 (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)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- 4. 의뢰자에 홍보자료, 유선·방문설명 등을 통하여 관대한 평가결 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
- ⑤ 의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신용평가 완료 전 예상 평가결과를 요구하거나 원하는 평가결과

를 암시하는 행위

- 2. 신용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의 조정을 요청하는 행위
- 3.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

제52조제3항제4호의9 및 제4호의10을 각각 제4호의10 및 제4호의11로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9. 제22조의6제5항을 위반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	제14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
정지) ① (생 략)	정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	②
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	
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	
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	
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의2.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
	한 경우
<u>5의2</u> . · <u>5의3</u> . (생 략)	<u>5의3</u> .· <u>5의4</u> . (현행 제5호의2
	및 제5호의3과 같음)
6. 삭 제	
7. ~ 11. (생 략)	7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22조의6(기업신용조회회사의	제22조의6(기업신용조회회사 등
<u>행위규칙)</u> ① (생 략)	의 행위규칙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다음	2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 3. (생 략)

 ③·④ (생 략)

 <신 설>

- 3.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의뢰자"라 한다) 또는 그의 이해관계인에게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는 특정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(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)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- 4. 의뢰자에 홍보자료, 유선· 방문설명 등을 통하여 관대 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
- 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- ③·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의뢰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신용평가 완료 전 예상 평 가결과를 요구하거나 원하는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행위
- 2. 신용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의 조정을 요청하는 행위
- 3.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

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

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

제52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4의8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4의9. · 4의10. (생략)

5. ~ 18. (생략)

④ ~ ⑦ (생 략)

위

제52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~ 4의8. (현행과 같음)

4의9. 제22조의6제5항을 위반 한 자

4의10. · 4의11. (현행 제4호의9 및 제4호의10과 같음)

5. ~ 18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